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 2006~23 제출연월일 2006. 4.12. 제 출 자 거 창 군 수

1. 제정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의 개정·시행에 따라 현행 방재제도로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 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 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(안 제2조).

- 나.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, 위원회의 회의는 제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 (안 제5조).
- 다.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(안 제7조).
 -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
 -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
 -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
 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검토
- 라.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시 1회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및 해촉 조치를 취함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(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)

▶ 표준안 : 도 복구지원과-3798(2005. 10. 16)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기 타

(1)신・구조문대비표: 해당없음

(2)입법예고(2006. 2. 24~ 3. 16)결과 : 의견제출 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거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장(이하 "본부장"이라 한다)이 정하는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 원회(이하 "검토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 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위촉장의 교부)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4조(위원장)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.

-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, 사무를 총괄한다.
-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검토위원회 운영)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.

-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 워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6조(임기)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공적·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
 - 2.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
 - 3.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
 - 4.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제7조(기능) 검토위원회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다.
 - 1.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
 - 2.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 - 3.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
 - 4.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
- 제8조(검토의견 제출)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,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현지조사)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해당 위원, 사업시행자,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의의견 반영)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의 공정검토 의무)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,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,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2조(회의록)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 다.

- 1.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 성명
- 3. 검토사항
- 4. 토의진행사항
- 5. 위원발언 내용
- 6.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
- 7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간사)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 -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.
 -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 - 1.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
 - 2.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
 - 3.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
 - 4.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

제14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「거창군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